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1 29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OSG 주식회사의 본사, 호산공장, 갈산공장에 종사하는 전 사원 및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2. 목 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2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3 안 전

인적, 물적, 환경적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4 사 고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사원의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 및 환경오염을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서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3.5 안전관리

회사내에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소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관 련 규 정		주관부서	인사지원실	
		작 성	검 토	승 인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2 29

3.6 보건관리

사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 노동력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작업자의 건강에 심한 영향을 주는 각종 조건을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7 재 해

사고의 최종 결과로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3.8 중대재해

-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3.9 불안정한 행동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성을 저하하는 행동을 말한다.

3.10 불안정한 상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조건을 말한다.

4. 업무분장

이 규정의 주관부서는 **인사지원실**로 하고, **인사지원실장**이 담당한다.

4.1 안전 및 보건업무의 우선

회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을 제일우선의 원칙으로 하며, 사고의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적 측면에서 안전, 보건 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4.2 사고예방의 책임

회사는 작업장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회사의 최고경영자와 전사원의 공동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과 같다.

4.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당사의 사장으로 임명하며 사장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사원의 생명보존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4.2.2 안전보건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스태프 및 라인 관리자를 지도, 조언하여 안전보건담당자의 역할을 다한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3 29

4.2.3 관리 감독자

생산라인의 관리 감독자는 법 제16조에 의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 재해 및 환경오염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

4.2.4 안전보건관리 스태프 (참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여 안전 보건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2.5 일반사원

회사의 전사원은 산업안전 보건법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5. 조 직

5.1 조직의 구분

5.1.1 법상 회사의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라인(계선)조직과 스태프(참모)조직 및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 구분한다.

5.1.2 라인 조직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보건 담당, 관리감독자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환경경영 대리인으로 구분한다.

5.1.3 스태프 조직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 보건의로 구분한다.

5.1.4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자체 소방대, 환경비상연락망 및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5.2 기 구

당사의 안전 보건 조직의 기구표는 [별첨 1]에 따른다.

5.3 안전관계자 임명 등

5.3.1 라인 조직상의 각 관계자는 회사의 조직계통에 따라 임명된 관리 감독자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5.3.2 스태프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격자를 선임 임명하여야 하며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4 29

5.3.3 회사는 5.2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5.4 라인(계선)조직과 직무

5.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가. 사장은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한 관리 책임자 및 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7조 및 18조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사내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직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10)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11) 작업의 중지
- (12)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13)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5.4.2 안전보건담당

가. 경영기획본부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담당 직무를 수행한다.

나. 안전보건담당 직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나항 직무에 따른다.

5.4.3 관리감독자

가. 생산부의 선임감독자, 책임감독자, 부서장 또는 팀장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자기 소속 작업장 및 직원들에 대한 안전 보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 (1) 관리 감독자가 직접 지휘 감독하는 (이하 “당해작업”이라 한다)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5 29

- (2) 관리 감독자에게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 (4)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5) 해당 작업장의 정리 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6)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안전 목표와 방침의 전달
 - 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안전관리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 나)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보건관리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 다) 산업보건의
-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8)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 감독자가 가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및 장비 예산 기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5.4.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의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6) 직업성 질환 증상, 여러명이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요청
-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 (9)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10)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5 스태프 조직과 직무

5.5.1 안전관리자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6 29

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된 업무와 관계법 및 규정이 정하는 업무 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 (2)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계획수립
- (3) 안전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 (4) 안전관계요원의 지도 및 독려
- (5) 안전점검,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6)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홍보
- (7) 하도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 (8)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확인
- (9)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5.5.2 산업보건의

가. 회사는 법 제22조 1항 및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산업보건의 업무를 영남의대 부속병원에 위촉한다.

나.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위촉 계약 조항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산업보건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가 항의 산업보건의 직무는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5.5.3 보건 관리자

가. 법 제18조 1항의 보건관리가 수행할 업무를 동조 제4항에 의거 영남의대 부속병원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실시케 한다.

나. 가 항의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지도 감독규정에 의하되 대행위탁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6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5.6.1 위원회 구성

회사는 법 제24조에 의거 동조 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가.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재 시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나. 위 원

- (1)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7인 이내의 근로자
- (2)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7인 이내의 부서장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7 29

(3) 근로자측 위원 부재 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 간 사
보건담당자

5.6.2 개최시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매년 3개월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6.3 심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법 제 24조 제 2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가.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 달성
- 나. 시설·설비 등의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
- 다. 안전 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라. 안전 보건 관리규정, 각종 안전보건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 마. 안전 보건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바.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안전

5.6.4 회의 결과의 주지

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1) 사내 게시판에 부착
- (2) 자체 정렬 조회 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
- (3) 기타 방법

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결과를 [별첨 2]의 양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업무처리체계

6.1 안전보건 교육

6.1.1 통 칙

가. 교육의 구분

- (1) 안전보건 교육은 교육실시 책임에 따라 법 **제29조에** 의한 사내 안전보건교육과 법 제32조에 의한 직무 교육으로 구분한다.
- (2) 사내 안전보건 교육은 회사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 대상에 따라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 안전보건 교육 및 정기 교육으로 구분한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8 29

(3) 직무교육은 노동부 장관이 법에 의거 선임된 회사내의 안전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나. 교육 담당자

안전업무 담당자가 교육 담당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교육계획의 수립

회사의 교육 담당자는 매년 1월중에 당해년도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에 관한 실시 절차는 교육훈련 규정(KOS-A-1220)에 따른다.

라. 책 임

(1) 전 사원은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르는 사내 안전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2)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계획된 교육에 참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시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게 불참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교육 불참시에는 회사의 징계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6.1.2 사내 안전보건 교육

가. 신규 채용자 교육

(1) 회사에 신규로 채용된 사원에게는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②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③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④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⑥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⑦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⑧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사내 근무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 하고자할 경우 변경업무 개시 전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내용은 신규 채용자 교육내용과 동일하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9 29

다. 특별 안전보건 교육

(1)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크레인 작업, 압력용기 취급작업, 유기용제 취급작업, 로봇 취급 작업, 보일러의 취급 작업, 전기 취급 작업 근로자는 작업 배치 전에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16시간이상의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1) 항의 특별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크레인 작업

- A.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B.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 기구의 점검에 관한 사항
- C. 화물의 취급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 D. 작업 신호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 E.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압력용기 취급작업

- A.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B.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C. 용기의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D.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E.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유기용제 취급작업

- A. 취급물질의 성상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B. 유해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 C.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D. 안전작업 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E. 기타 안전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로봇 취급작업

- A.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B.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C.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D.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취급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2에 따라 실시한다.

라. 정기교육

(1) 사내 모든 소속직원에게 매월(생산직 2시간 이상, 사무직 1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10 29

(3)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④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관리감독자 교육

(1) 사내 관리감독자는 **법 제26조의** 정기교육과 별도로 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1)항의 정기교육은 교재, 강사의 확보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곤란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년 1회 16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2)항에 의거 위탁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바. 강 사

(1) 강 사

사내 안전보건 교육은 **시행규칙 제 26조 3항에** 정한 자격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실시 방법

사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패도, 슬라이드 등을 작성하여 실시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3) 교육관계 서류의 보존

- ① 교육실시 결과를 [별첨 3]의 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교육관계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1.3 직무교육

가. 교육대상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은 법 제32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한 직무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11 29

나. 교육주기 등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 3월 이내 6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선임 3개월 이내 34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2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교육수강 신청

교육담당자는 교육 주기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 교육지정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6.2 안전관리

6.2.1 통 칙

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수립

- (1) 안전관리자는 매 기수별 보건관리 대행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2) 안전보건관리 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진단

법 제4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모든 사원은 이 개선계획을 준수 시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수칙

- (1) 작업장 내에는 안전유지상 직원들이 작업간에 지켜야할 사항으로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일반 안전수칙과 위험작업 부서의 안전수칙을 제정 활용하여야 한다.
- (2) 전 직원은 작업간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지

- (1) 법 제 51조 및 제 52조에 의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 등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12 29

(2) (1)항의 작업중지 조치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행한다.

(3) 모든 작업자는 가 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 표지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등에는 **법 제37조에** 안전보건표지를 작업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 및 부착장소는 작업장 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6.2.2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조치

가.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

(1) 유해.위험기계기구는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 ① 예초기
- ② 원심기
- ③ 공기압축기
- ④ 금속절단기
- ⑤ 지게차
- ⑥ 포장기계

(2)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사용시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방호조치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 지정

안전관리자는 위험기계·기구를 사용시에는 당해 기계·기구의 방호장치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다. 준수사항

(1) 작업자는 **시행규칙 제 99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②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13 29

③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2) 사업주는 (1)항 각호의 신고가 있을 시 즉시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2.3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시에는 **법 제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아 인증표시 된 것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6.2.4 안전검사

(1)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 중 시행령 **제78조 1항** 안전검사에 해당하는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법 제93조 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 신청은 검사주기 만료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 교부 받은 검사필증은 해당 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4) 안전검사 주기는 2년이며 대상기계·기구는 다음과 같다.

- ① 프레스
- ② 전단기
- ③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④ 리프트
- ⑤ 압력용기
- ⑥ 곤돌라
- ⑦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 ⑧ 원심기(산업용에 한정한다)
- ⑨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한다)
- ⑩ 사출성형기
- ⑪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 ⑫ 컨베이어
- ⑬ 산업용 로봇

6.2.5 안전점검 및 순찰

가. 점검 및 순찰의 책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는 현장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14 29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 발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 시행 할 책임이 있다.

나. 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업무 담당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최소한 관리책임자 1일1회 이상, 안전 업무 담당자는 1일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2)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관해 안전·보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3) 모든 작업자는 작업전에 일상 안전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 (4) 관리책임자는 신 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 방법 도입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자체 안전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다. 점검방법

점검자는 반드시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계장비의 청소정비, 안전상태 부착상태
-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유무
- (3) 유해 위험물, 생산원재료 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유무
-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
-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지판 설치상태
-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라. 점검결과 조치

- (1)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해결을 강구, 시정조치를 즉시 시행 하고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보건관리 대행기관 담당자의 점검 결과 보고서는 보건 담당자가 접수(중요사항 발견 시는 직접보고 가능)하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15 29

- (3) 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 지시를 하고 작업자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하며 점검주관자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6.2.6 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가. 안전기준

- (1) 작업장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공정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① 각종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 ②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 ③ 위험물 안전기준
 - ④ 운반작업 안전기준
 - ⑤ 기타 작업에 관한 안전기준
- (2) (1)항의 안전기준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하여 작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한다.

나. 표준 안전작업 지침

- (1) 모든 작업을 작업별로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 안전작업 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2) (1)항의 표준 안전작업 지침은 내용별로 작업반장 책임하에 안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거 당해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하여 작성한다.
- (3) 작업자는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 ① 기계, 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 ②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 ③ 기계, 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6.2.7 위험물질의 취급 등

가. 위험물의 보관 등

- (1) 법상 위험물질인 유기용제 취급 작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조장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16 29

- (2) (1)항의 위험물질 및 필요에 의거 다른 위험물질을 사용시는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한다.
- (3) 위험물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법 제140조에 의거 면허, 자격 또는 경험을 가진 자만을 배치해야 하는 작업과 해당 자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화성 물질취급자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 소지자
- (2) 크레인 취급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여한 자격
- (3) 동력전달 장치의 청소, 주유 또는 벨트를 옮겨 끼우는 업무는 3개월 이상 유경험자

6.3 보건관리

6.3.1 건강진단

가. 건강진단의 구분

법 제129조 및 법 제130조에 의거 직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에는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나. 건강진단 실시 방법

- (1) 배치전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시 또는 작업변경 시,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다만, 당해 연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사직후 회사에 입사하는 자가 전 사업장에서 받은 건강진단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고 일반 건강진단의 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 (2) 일반 건강진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전직원이 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4) 특수 건강진단은 특정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상기 (1) (2)항의 건강진단시 및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으로 시행규칙 **별표 22와 23**에 따라 실시한다.
- (4) 건강진단은 회사 지정 의사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미 희망시 다른 의사로부터 (1) 또는 (3)항에 상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관리팀에 제출할 수 있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17 29

다. 진단결과 조치

- (1) 업무관리 부서의 팀장은 진단기관으로부터 상기 (2) (3)항의 [건강진단 개인표]를 교부 받아 직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건강진단 결과표]를 작성하여 진단 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43조 4항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받아 지체 없이 건강진단 결과표를 따로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상기 (1), (2)항에 명시된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 결과표, 건강진단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질병자 근로 금지 등

- (1) **법 제13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① 전염성 질환
 - ②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 ③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
 - ④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질환
- (2) (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 관리 대행기관의 담당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건강진단 결과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는 당해 업무로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선 안 된다.

6.3.2 작업환경 측정

가. 측정대상 작업

작업장 내에 **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작업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18 29

나. 측 정

- (1) 매 6개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 (2) 작업환경 측정은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근로자 대표 요구시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측정결과 조치

- (1) 작업환경 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당해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와 설치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2) 보건 담당자는 작업환경 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교부받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4) **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3.3 유해물질 관리 등

가. 유해물질 취급 부서

유해물질인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반은 법에 의한 유해물질 취급 부서로 하고, 동 작업장의 작업반장 책임하에 건강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한다.

나. 유해물질 표시 등

유기용제 취급 작업장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1) 명 칭
-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 (3) 취급상 주의사항
-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5) 오염시 긴급 방지 요령

다. 보건 수칙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장은 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작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19 29

6.3.4 보호구 등

가. 보호구 착용 작업 등

(1)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장과 지급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아세틸렌 용접작업 : 보안경 및 보호장갑
- ② 감전 또는 전기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절연용 보호구
- ③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작업 : 귀마개·귀 덮개
- ④ 추락의 위험을 느낄 때의 작업 : 안전모·안전화
- ⑤ 특정 화학물질 취급자용 : 호흡용 보호구
- ⑥ 기타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2) 보호구의 지급기준은 과거의 소모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여 소요량을 구매 작업장별로 작업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 착용하도록 한다.

(3) 모든 직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을 금한다.

(4) 보호구 관리는 보호구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관리토록 한다.

(5) 작업반장은 보호구를 항상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작업반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서는 안된다.

나. 작업복

(1) 작업장 근무자는 규정된 계절별 작업모 및 작업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2) 모든 사원은 작업 중에는 규정된 작업복 이외는 착용할 수 없다.

(3) 작업복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천으로 만들어 지급해야 한다.

다. 보건 수칙

(1) 작업장의 조명, 정리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기준 등의 보건기준을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20 29

(2) 근로자는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3.5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서는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3년마다 실시한다.

다. 유해요인 조사결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설비 및 편의 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한다.

6.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6.4.1 재해발생시 처리 절차

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의 직속 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관리자에게 재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지정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4.2 긴급조치

가.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나. 사무실에는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동 들 것)와 응급용구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다.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4.3 비상연락망

재해 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6.4.4 사고조사 및 보고

가.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지시없이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21 29

다. 안전관리자는 재해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대 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기타 중요한 사항

다.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사고조사는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마.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 실시

바. 안전관리자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해야 한다.

6.4.5 재해 분석

가. 안전관리자는 매 분기중에 발생한 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매 익년 1월중에 전년도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 다발 원인 및 부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다.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6.5 위험성평가

6.5.1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5.2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22 29

6.5.3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 가.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
- 나. 위험성 결정의 내용
- 다.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라. 그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5.4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가.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 나.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6.6 상 별

6.6.1 표 창

- 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작업반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중에 표창 상신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동기를 유발토록 한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23 29

나.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 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 (2)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 (3) 안전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6.6.2 징 계

가. 법이 정한 명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

나. 징계요구 대상은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 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다. 기타 관리감독자 및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6.6.3 상별평가 기준 등

가. 표창 또는 징계 요구시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손실금액
-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 실적
- (3) 무재해목표 달성 실적
- (4) 안전수칙 실천 상황, 교육 및 안전활동
- (5) 사원의 참여 의식 및 이행 상태
- (6)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사내 상벌 규정에 따른다.

6.7 보 칙

6.7.1 무재해 운동

가. 회사 전직원이 참여하는 총합의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실시한다.

나. 무재해 운동기법으로 5C 운동과 위험예지 훈련을 실시한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24 29

6.7.2 무재해 목표 시간

회사의 무재해 운동 목표 기간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을 준용한다.

6.7.3 무재해 운동 포상

가. 무재해 추진반 단위로 노동부 무재해 포상 기준 적용을 아래와 같이 포상한다.

시 상 기 준	1배 달성	2배 달성	3배 달성	4배 달성	5배 달성
목 표 일 수	200일	400일	600일	800일	1,00일
포 상 (원/人)	3,000	5,000	10,000	15,000	20,000

나. 가항의 포상이외 유공자에 대한 개인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6.7.4 안전보건 제안

가. 전 직원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제안제도 운영 규정 (KOS-A-1250)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나. 각 부서마다 제안창구를 설치하여 전 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7.5 승인 및 심의

가. 생산부가 유해 위험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 안전관리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해야 한다.

- (1)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 (2) 전기작업
- (3) 소방 및 안전시설과 장치의 해체 또는 기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작업 등

나. 생산부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관계 법규상 적절성 여부를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 (1) 안전 담당자 및 작업장 안전수칙 변경 시
- (2)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발주 전
- (3) 건물 또는 생산시설의 신설, 증설 개수 시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25 29

6.7.6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가.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나. 규정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회사표준 관리 규정 (KOS-A-0330)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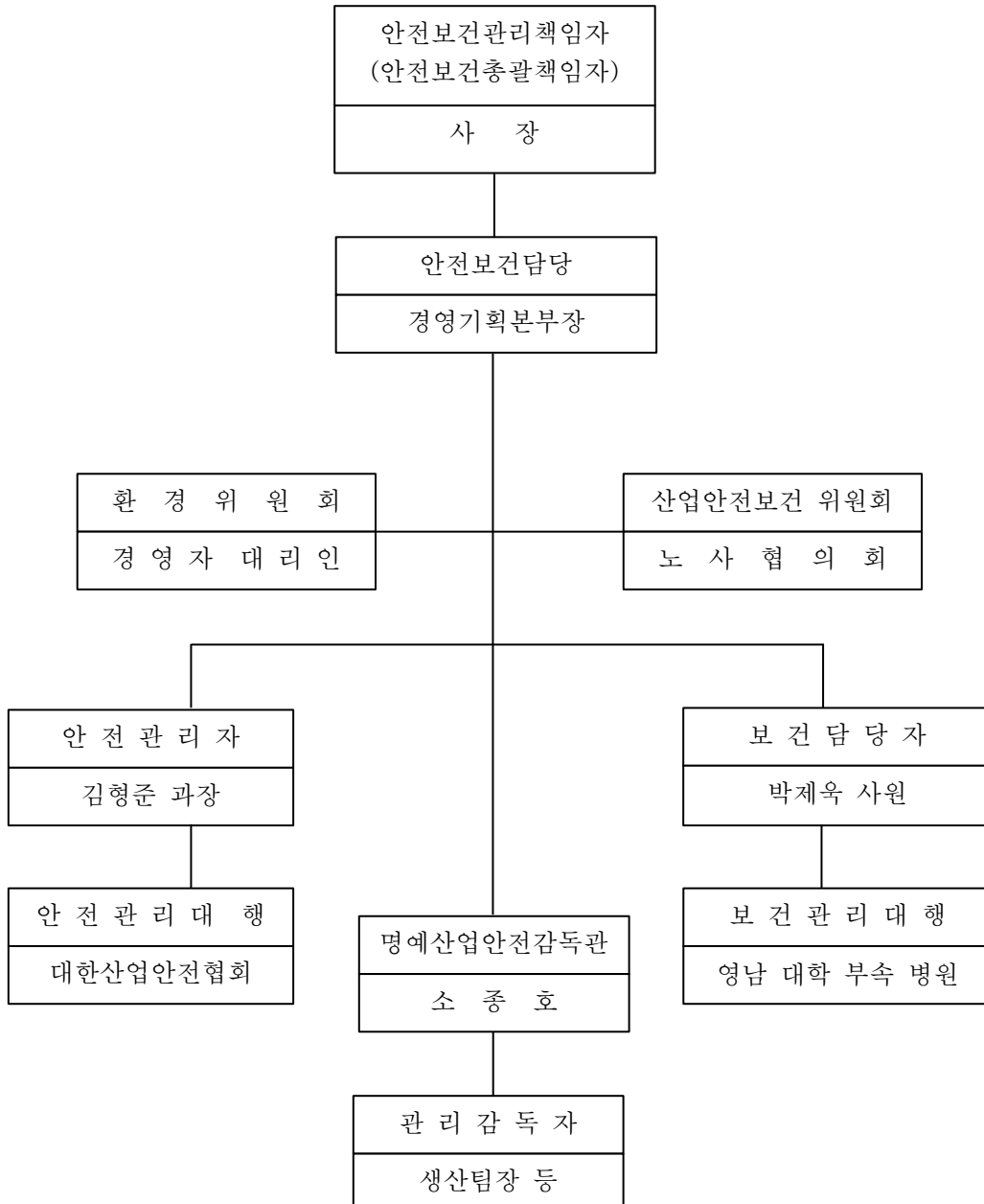
이 규정은 202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관리절차]

이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절차는 회사표준 관리 규정(KOS-A-0330)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26 29

[별첨 1] 안전 보건 조직 기구표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27 29

[별첨 2] 안전 보건 위원회 기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기타참고사항	
전 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사항	

■참석위원 서명

근로자위원 성명	날인	사용자위원 성명	날인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28 29

[별첨 3] 안전교육 일지

안전교육일지

20

결 재				

1. 교육구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3. 특별안전교육(년간 16시간 이상) 4. 일반안전(월 2시간 이상)		
2. 교육인원		계	남	여	
	근로자 수				
	대상인원				
	교육실시 인원				
3. 교육시간	시 분 ~ 시 분 (시간)				
4. 교육장소					
5. 강사명	직위 및 직책	성명	비고		
6. 교육자료	교안	차트	시정각		
7. 교육내용	교육항목	세부내용			시간
8. 참석자	소속	성명	확인	소속	성명

A-0550-②

韓國 OSG 株式會社

A₄(210×297)

OSG-KOREA	관 리 표 준	분류번호	KOS-A-0550	
		제정일자	1987년 10월 23일	
		개정일자	2021년 03월 29일	
총 무 관 리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개정번호	15	29 29

[별첨 4] 작업 시작전 일상점검표(관리감독자)

2018년 ()월 작업 시작전 일상점검표(관리감독자)		결																									담당	팀장								
소 속	관 리 감 독 자	재																																		
검 사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로 봇 및 연 삭 설 비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로봇 본체의 작동 이상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방책의 설치상태																																			
	방책의 안전센서 작동상태																																			
	설비의 이상소음 발생 유무																																			
	설비의 방호커버의 손상 유무																																			
크 레 인	권과방지장치의 상태																																			
	브레이크장치의 기능상태																																			
	주행로의 상측의 레일상태																																			
호 이 스 트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로프 및 섬유로프의 이상유무																																			
	축크 및 해지장치 설치상태																																			
	피부하장치 램프 점등상태																																			
지 계 차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상태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유무																																			
	각종 램프 및 경보장치 이상 유무																																			
	엔진의 이상을 발생유무																																			
기 타	후진경보기 작동상태																																			
	개인 보호구(안전인증품) 착용 상태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오일 누유 여부																																				

※점검표시 방법 : 양호 O , 보완 △ , 불량 X , 해당이 없는 경우 /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